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2026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PART **I** 광주교육 기본 방향 7

PART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11

PART **III** 학생 건강관리 강화

- 1. 학교 보건관리 15
- 2. 보건교육 내실화 20
- 3.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28
- 4.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35
-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46
- 6.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 학생 관리 체계 강화 50

PART **IV** 학교보건 보고 사항

-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68
-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68
- 3. 제1형 당뇨 등 건강취약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69
- 4.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70
- 5. 보건교육 실시 현황 71
- 6.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 현황 72
- 7. 교직원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현황 73
- 8.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 보고 74

PART V 참고 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77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79
3. 2026년도 학생 건강검사 비용	80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항목 및 방법 병리검사 판정 기준	81
5. 문진표(초등학생용)	92
6. 문진표(중·고등학생용)	93
7.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94
8.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95
9. 학생건강기록부	96
10.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98
11.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99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101

I

광주교육 기본 방향

광주교육 기본 방향

교육상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교육
지표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5대 주요시책



교육상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미래를 함께 여는'은 다양한 교육구성원과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준비하고 열어가자는 의미

'혁신적 포용교육'은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중심 교육을 의미

교육지표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창의성을 갖춘'은 광주학생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의성과 인지적 능력을 쌓는 것을 의미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은 따뜻한 정의적 품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등에 관심을 갖는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

슬로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학생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적 혜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정과 책임교육을 의미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상황을 인정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성교육을 의미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II.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건강한 학생이, 세계를 바꾸는 민주시민으로!



보건교육 활성화

- ▶ **보건교육 내실화**
 -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자율장학 활동 강화
 - 학교보건 지원강사 운영
 - 학교보건건설팀단 운영
 - 보건교육자료 대여사업 실시
- ▶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 건강증진 영역별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약물(마약류, 흡연·음주 포함)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예방중심 건강관리

- ▶ **학교 보건관리**
 -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 ▶ **학생 건강검사 철저**
 - 학생 건강검사 실시
 - 별도 검사 실시
 - 표본학교 지정·운영
- ▶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결핵 예방사업
 - 취학 전 예방접종 관리
- ▶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 학교 내 응급관리체계 구축 운영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지원
 - 교직원 연수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학생 건강관리 체험교실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 유공자 표창
-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
 - 불균형 체형 예방 캠프 운영
 - 교육자료 보급
- ▶ **학교 흡연예방사업**
 -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지원
 - 찾아가는 흡연예방·금연교육 운영
 - 학생 금연학교 운영
- ▶ **건강취약 학생 관리 체계 강화**
 - 1형 당뇨 등 건강취약 학생 지원체계 구축
 -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

Ⅲ

학생 건강관리 강화

1. 학교 보건관리
2. 보건교육 내실화
3.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4.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6.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 학생 관리 체계 강화

01

학교 보건관리

기본 방침

-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 판단과 신속한 처치를 통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질병·감염병·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이 스스로 건강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보건교육 실시
- 건강취약 학생에 대한 개별지원과 가정·지역사회·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환경 조성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실 설치 및 보건 교사 배치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학교수	보건실 설치	보건교사 배치 현황				보조인력 (자문사)	비고
			정원	정원외	배치율 (%)	2인 배치 (36학급이상)		
초	155(1)	155(1)	154	1(1)	100	27	34	사립 1교 (전일제강사)
중	91	91	86	5(사립)	100	1	30	사립 5교 (정원외)
고등특수	74	74	74	.	100	6	36	
각종	2	1	2	.	100	.	.	빛고을은학교 호남삼육중
계	322(1)		316	6(1)	100	34	100	

주요 업무

- (교육청)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설치와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행·재정적 지원
- (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
 - (학교보건위원회)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 심의를 위해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
 - (학생건강증진센터) 학생의 건강 실태조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상담, 건강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운영
- (단위 학교)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건강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학교보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및 운영
 - 학교보건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예시)

사업명	세부 사항	실시 시기	대상
학교보건 기본계획	- 학교보건 사업계획 수립 - 보건실 운영 - 학교보건 사업계획 평가	3월 및 연중	전교생
학생건강검사	- 학생건강검사 계획 및 실시 - 학생건강검사 결과 가정 안내 및 추후관리	연중	전교생
질병예방관리	- 건강정보 제공 및 안내 유인물, 홈페이지 운영 - 예방접종 실시 안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	연중	전교생
응급환자관리	-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및 홍보 - 응급환자 발생 시 수립된 대책에 따라 시행	연중	전교생
일반건강 및 의료상담	- 보건실 방문 학생 관리 및 건강상담 실시 - 처치 학생 기록 및 관리 - 건강관련 정보 제공(학생 및 학부모)	연중	전교생
건강취약 학생 관리	- 건강취약 학생 파악 및 관리 - 건강취약 학생 교직원 안내	3월 및 연중	전교생
보건교육	- 보건교육 계획 수립 - 수업설계(보건교과의 특성 고려 여부) -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된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육 평가	연중	전교생

• 학교보건 월간 관리 계획(예시)

월별	업무 내용	비고
매월	1. 보건일지 작성 및 관리 2. 의약품 및 비품 관리(유효기간 주기적으로 확인) 3. 보건교육 및 보건소식지 발송 4. 학생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5. 감염병환자 발생 시 나이스 보고	
3월	1. 학교보건 기본계획 및 필요한 계획서 기안 및 결재 2. 보건실 정비(보건실 환경정리 및 비품 확인) 3. 보건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교육자료 구입 4. 학생 건강상태 실태조사 및 건강취약 학생 선정 및 관리 5. 반별 건강기록부 확인 및 점검 6. 학교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및 교직원 연수 7.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 및 교직원 연수 8.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9. 가정통신, 보건소식지(보건실이용 안내 등) 10.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으로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취약 학생을 선정해 교직원에게 안내함
4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건강취약 학생 건강상담, 가정통신 3. 학생 건강(구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 보건의 날 (4월 7일)
5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학생 건강(구강)검진 실시 3. 별도검사 실시 및 추후관리 4. 신입생 예방접종 관리 5. 교직원 연수-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세계금연의 날 (5월 31일) - 별도검사결과 이상자 가정통신 배부
6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건강검사 결과 배부 및 유소견자 추후 검사 가정통신 발송 3. 건강취약 학생 건강상담	- 구강보건의 날 (6월 9일) - 마약퇴치의 날 (6월 26일)
7월 ~ 8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학생 건강검진 결과 추후관리 대상자 추후관리 3. 생활습관병 등 질병 고위험군 대상자 교육 4. 건강기록부 입력 확인 및 관리	- 여름방학 준비 (가정통신)
9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건강취약 학생 상담 및 생활습관병 등 질병 고위험군 교육 3. 보건실 의약품 및 소모품, 수업자료 구입	- 귀의 날 (9월 9일)
10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가을철 유행 감염병예방 교육 3. 생활습관병 등 질병 고위험군 상담, 교육 및 관리	- 세계 눈의 날 (10월 두 번째 목요일) - 독감예방 및 접종 안내

월별	업무 내용	비고
11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건강취약 학생 상담 및 교육 3. 생활습관병 등 질병 고위험군 상담, 교육 및 관리	- 약의 날 (11월 18일)
12월	1. 교육과정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2. 생활습관병 등 질병 고위험군 상담, 교육 및 관리 3. 건강기록부 기록 최종 점검 4. 다음 학년도 보건실 예산 수립 5. 보건관련 각종 파일 정리 및 공문서 이관	- 겨울방학 준비 (가정통신) - 에이즈의 날 (12월 1일)
1~2월	1. 보건수업 및 보건업무 종합평가 2. 건강기록부 마감	

※ 업무 내용과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위 학교) 학교 보건실 및 의약품 관리에 철저

- 보건수업 등으로 인해 보건교사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
- 안정실 운영*: 학생이 안정실 이용할 경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악화 우려 시 보호자에게 연락,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안정실 운영수칙은 학교의 상황(학생의 출결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의약품 관리

- 1) 의약품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함
- 2)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
- 3) 학생이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의 의약품을 사용함
- 4)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 보관기간 준수 등 관리 철저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보건실 이외의 장소에 일반의약품함을 비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의약외품*은 모든 교직원이 취급 가능.

다만, 보건교사의 출장, 수업 등 부재 시 학교현장의 어려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학교 보건계획, 의약품 보관장소, 취급 주의사항 등) 내에서 학부모 동의절차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 문서 참고(학생건강정책과-1975, '25.4.18.)

〈주요 중점 관리사항〉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02

보건교육 내실화

기본 방침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 보건교육 중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 교육)
 - 성장기 학생의 신체 건강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 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 학년별 시행 시기: ('24) 초1~2학년, ('25) 초3~4학년, 중고 1학년, ('26) 초5~6학년, 중고 2학년, ('27) 중·고 3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관련 내용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 학교는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다)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라) 학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후략)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

- 1) 공통사항
-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후략)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262('25.10.16.) '2026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 범교과 학습 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간 연계·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주요 업무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및 대상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www.edunet.net): 창의적체험활동-주제별사진영상자료-보건안전교육
2. 에듀넷(www.edunet.net): 학습자료-주제별 학습자료-범교과학습주제(안전건강교육)
3. 에듀넷(www.edunet.net): 교육정책-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개발·배포 교육자료

-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연간 16차시 이상

※ (중·고등학교)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 및 이행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

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강화

- * 「초·중등교육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도 등에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원의 전문성, 학교 조직 운영, 교육정책 수행 정도 등을 지도·평가하는 활동으로, 전국 학교의 교육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국가위임사무임
- 학생 참여형·체험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필요시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지원, 학생건강정책과-4499호, '24.9.3. 참조)
- 학생건강증진센터 적극 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권·재산권 유의)
-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9. 25.] [광주광역시조례 제5528호, 2020. 9. 2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8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581호, 2025.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중점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6.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7.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9.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눈건강 증진
 - 가.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 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
 - 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

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

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지원

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가.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나.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운영

다.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라.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마.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에 스마트 기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건강 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연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581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2.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03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기본 방침

- 흡연·음주·마약류 등의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 시기부터 가정과 연계한 반복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현황

- 학생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 ▲ 현재 음주율 :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24년 대비 감소(남 2.0%p ↓, 여 1.4%p ↓)
- ▲ 현재 흡연율 : (담배제품 현재사용율) 남학생 5.4%, 여학생 2.8%, '24년 대비 감소(남 0.4%p ↓, 여 0.4%p ↓)
(현재 흡연율-궐련) 남학생 4.4%, 여학생 2.1%, '24년 대비 감소(남 0.4%p ↓, 여 0.3%p ↓)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 ※ ('19년) 239명 → ('23년) 1,477명 → ('24년) 649명 / 향정신성의약품 87%로 대다수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 ※ (기존)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합산 연 10시간 실시 → (개정) 전체 10시간 중 학교 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시간 제시(유·초 5, 중 6, 고 7차시)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 과정 개설·운영('23.5월~)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 ※ (주요 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24.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학교보건법」제9조의3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25.3.18.)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약류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교육 실시

주요 업무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강화

- (학교)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확대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에 맞춰 제작된 표준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실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교육청)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나. 교육자료 개발·배포

-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에 탑재하여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도 제고
-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마약청정 대한민국(www.nodrugzone.mfds.go.kr)에 탑재되어 있는 마약류 폐해 영상, 카드뉴스, 학습만화, 홍보 리플렛 등을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다. 담당 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연중)와 한국마약퇴치운동부 협업을 통해 개설·운영하는 집합연수*(1~2월) 이수 적극 안내
 - * 교육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자격·직무연수 등에 마약류 예방교육 1개 과목 이상 개설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별도 운영하되, 체험형 예방교육,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토론형 수업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법무부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예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안내

※ '26년 지원 예정 횟수 : 법무부 법교육(약 1,000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약 30,000회)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지원 관련 연락처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강사수	비고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6, 네오빌딩 5층)	(062)384-2818	62	
2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동구 구성로 190, 2층)	(062)416-2111	4	
3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서구 풍금로 151번길 6-2, 연수빌딩 2층)	(062)654-3802	7	
4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남구 독립로 25-1, 3층, 4층)	(062)413-1195	3	
5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북구 중가로 26)	(062)526-3370	3	
6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	(062)714-1233	3	
7	광주경찰청 SPO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소촌동))	(062)609-2549	10	

라.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 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계속, 교육부)

마.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마약류 중독 등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안내 및 연계 기관〉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마약예방, 재활 상담	24시 용기한걸음센터	134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5호, 2019.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학교장은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각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12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5,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2.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976호, 2022. 10.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94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기본 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현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학교보건법」제14조의3에 따른 제2차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23.12월)
- 「학교보건법」제14조의4에 따른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제작·배포('23.12월)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계속)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10시간)
-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를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예정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 시 조치 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감염병 확진 학생 관리 및 학교 유행·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완치자에 대한 보고 철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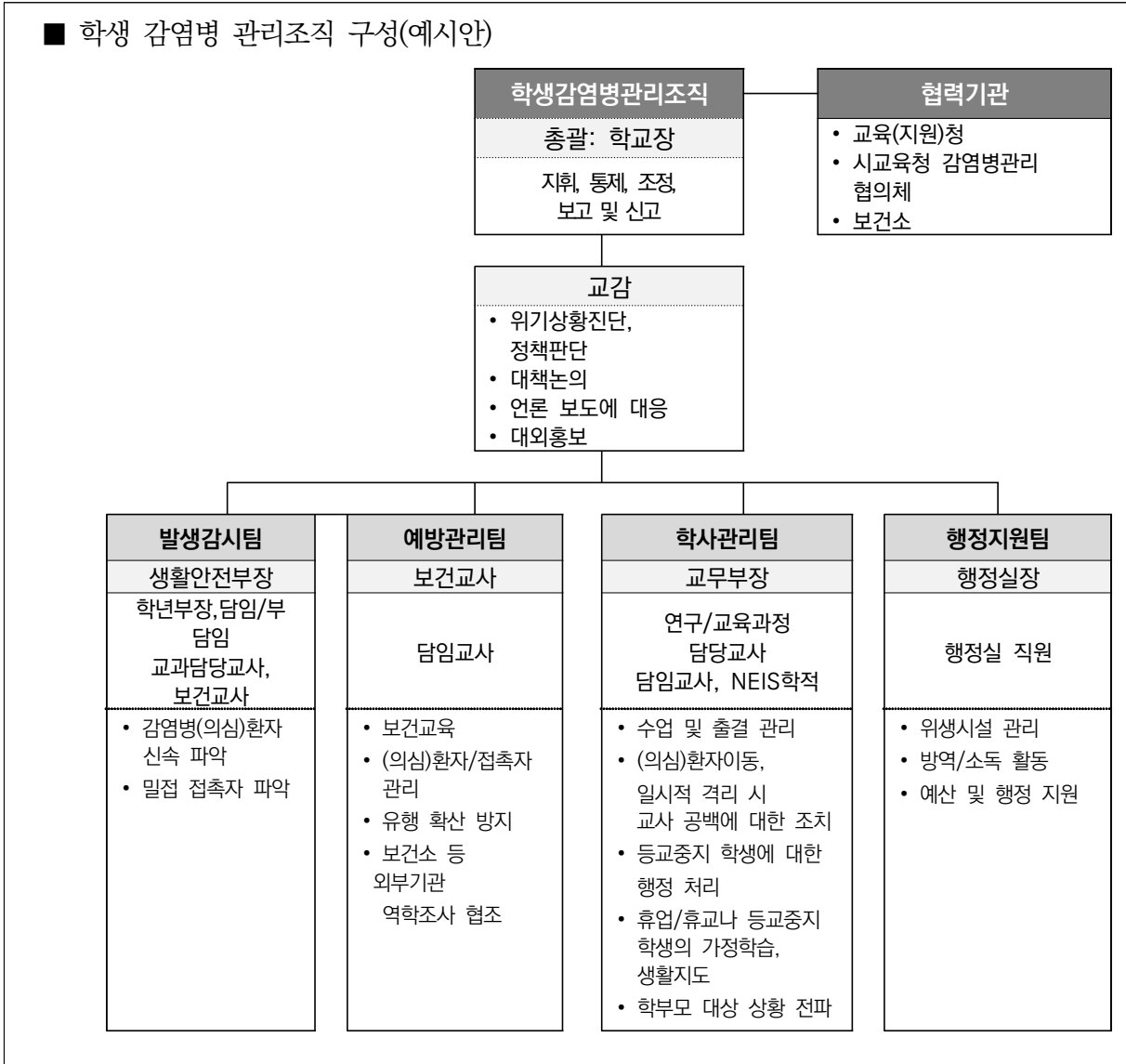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공문 별도 시행)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예시안)



-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 학생 중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권고(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 협의)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 검사 필요 없음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 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

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26.2월 중 연계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 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8.1.>
5. “교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8.1.>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자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63호,202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A형간염	피로감, 발열, 오한, 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임상증상 시작되기 2주전~황달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1주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15-50일 (평균 28일)	○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	○	×
B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 증세, 황달, 근육통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60-150일 (평균 90일)	×	×	×
C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 증세, 황달, 근육통	증상 나타나기 1주~수 주일 전부터 전파 가능	등교 중지 안 함	15~150일	×	×	×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 기간 내내	등교 중지 안 함	병원체마다 다양(보통 2-14일)	×	○	○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	○	○
공수병	공수증, 불안감, 두통, 발열, 중추신경계 증상	이환 기간 내내	이환 기간 내내	20-90일 (평균 30-60일)	×	○	×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	○	×
급성 출혈열균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출혈 경향	병원체마다 다양	이환 기간 내내	병원체마다 다양	○	○	○
노로 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	○	×
뇌수막염	발열,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	○	○
댕기열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14일 (평균 4-7일)	×	×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인플루 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이 있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3-10일 (평균 7일)	○	○	○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두창 (천연두)	고열, 허약감, 오한, 두통, 반점, 구진상 발진	발열 시작부터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12-24일 (평균 7-17일)	○	○	○
디프테리아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 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 14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14일 간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2-6일	○	○	○
라임병	유주성 흥반,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	×	×
레지오 넬라증	폐렴형(발열, 오한, 마른기침), 독감형(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0일 (평균 10일)	×	×	×
렙토스 피라증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 5~10%에서 황달, 신부전 등의 중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평균 5-7일)	×	×	×
말라리아	주기적인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7일 (평균 15일), 6~12개월	×	×	×
발진열	발진, 발열, 오한, 근육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18일 (평균 10일)	×	×	×
발진티푸스	오한, 고열, 두통, 근육통	몸이 뜨는 머릿니가 있는 경우	몸이 뜨는 머릿니를 제거할 때까지	6-15일 (평균 7일)	○	○	×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	○	○
보툴리눔 독소증	뇌신경 마비, 대칭적이며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72시간	×	×	×
브루셀라증	발열, 발한, 두통, 요통, 위장관계, 골격계, 신경계 증상	성 접촉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2-4주	×	×	×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감염 전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등교 중지 안 함	6시간-10일 (평균 6-48시간)	○	○	×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	○	○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세균성 이질	발열, 복통, 구토, 혈액이나 고름이 섞인 설사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12시간-6일 (평균 2-4일)	○	○	×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발진 1-2일 전 부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	○	○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	○	○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3-7일	○	○	○
신증후군 출혈열	발열, 오한, 근육통 → 저혈압 → 핏뇨 → 이노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3주	×	×	○
요충증	항문 주위 가려움증, 굵은 부위 발적, 종창, 습진	치료를 통해 모든 충체를 제거하기 전까지	등교 중지 안 함	1-2개월	○	×	×
웨스트 나일열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	×	×
유비저	국소 감염, 급성 폐감염, 만성 화농성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일, 수년까지 가능	○	×	×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	○	×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염 발현 3일 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 14-18일)	○	○	○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 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	○	○
일본뇌염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7-14일	×	×	×
장관 감염병군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이환 기간 내내	등교 중지는 의미 없음	질환마다 다양	×	○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경련성 복통, 혈성 설사, 발열, 구토	발병 후 1주(최대 3주)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2~8일	○	○	×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장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변비	이환 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3-60일 (평균 1-3주)	○	○	×
중증호흡기 증후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인후통	이환 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2-14일 (평균 5일)	○	○	○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상	주로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동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까지	2-10일 (평균 4-6일)	○	○	○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고열, 구역,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일-2주	×	×	×
진드기 매개뇌염	발열, 권태감, 근육통, 오심, 구토 → 신경계 증상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4-28일 (평균 8일)	×	×	×
쯔쯔가무시 증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가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8-11일	×	×	×
콜레라	쌀뜨물 같은 설사, 복통, 구토	대변 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 정도)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6시간~5일 (평균 2-3일)	○	○	×
규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복통	성 접촉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	×	×
크로이츠펠 츠- 야콥병	아급성 진행성 치매, 근 경련, 기억력과 공간 지남력 장애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	등교 중지 안 함	수개월-수년	×	×	×
탄저	피부탄저(구진, 수포성 궤양), 폐탄저(호흡기 증상), 장탄저(소화기 증상)	이환 기간 내내	이환 기간 내내	1일-60일 (평균 1일-7일)	○	○	○
파라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변비	이환 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1-3주	○	○	×
파상풍	경부 경직, 연하곤란, 근육수축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일-수개월 (평균 3-21일)	×	○ (개방성 상처인 경우)	×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⁴⁾	마스크 착용
페스트	림프절형(오한, 발열, 근육통), 폐렴형(오한, 발열, 기침, 객담), 패혈증형(오심, 구토, 설사)	이환 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6일	○	○	○
폐렴구균	폐렴(고열, 오한, 객담, 기침), 급성중이염(귀통증, 이명, 두통)	불명확(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3일	×	○	○
폴리오	발열, 권태감, 인후통, 뇌수막염, 이완성 마비	바이러스 노출 후 3-6주까지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7-14일	○	○	×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 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기기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	○	○
한센병	나종형(소결절, 구진, 반점, 미만성 침윤), 결핵형(몇 개의 피부병변, 말초신경염)	치료 시작 후 3개월까지	치료 시작 후 3개월까지	3-5년	○	○	×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5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7-18일 (평균 10-12일)	○	○	○
황열	발열, 두통, 권태감 → 10~20%에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6일	×	×	×

- 1)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등교 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
-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 4)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것

05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목적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개선이 필요한 건강행태 또는 건강 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인스턴트 섭취율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이후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학생 건강검사 결과 연도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 ('19) 25.8% → ('21) 30.8% → ('22) 30.5% → ('23) 29.6% → ('24) 29.3%
-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25.12.10. 법사위 의결)

기본방향

- 학생 건강검사제도 운영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 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 학년	당해 학교 교직원	학기 초(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연중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 시력검사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교 자율로 시행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의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검사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제7조의2 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 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 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 요청
 -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질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 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 표본학교로 선정된 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9.30.까지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적극 협조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항목 조정 등 추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27년 전면시행 예정)을 위한 `26년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 (자료 제출, 예산 등) 필요

주요 업무

○ 신체발달 상황 검사

- 대상: 초등학교 2·3·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 검사 시기: 3~7월 중
- 검사 항목: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 건강 조사

-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 조사 시기: 학기 초(3월중)
- 조사 방법: 건강조사 설문지로 조사

○ 건강검진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검진 시기: 연중(단,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경우 3~9월)
- 검진 항목 및 방법: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진단
- 검진기관 선정: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한다. 다만 2개 이상 선정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검진 절차: 학생이 선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다.
- 검진 결과 통보: 검진 후 30일 이내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 별도검사

- 별도검사는 학생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전원 검사 실시
- 유소견자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 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조기 발견, 치료
- 별도검사 시 출결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
- 검사비는 해당 학생 전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급하며 검사 현황은 학생 건강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 X-선 검진 결과 유소견자(중증, 중등증, 경증)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하고, 의사진단 결과 결핵소유자(타인에 감염)는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사 보류자 재검사 실시

검사 항목	대상 학년 (특수·각종학교 포함)	검사기관	검사종류	검사비 (1인당)	검사 시기	비고
소변 검사	초 2, 3, 5, 6 / 중 2, 3 / 고 2, 3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당, 단백, 잠혈, PH 간기능, 케톤체	1,530원	3~10월	
결핵 검사	고 2, 3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 촬영	4,330원	3~9월	
구강 검사	초 2, 3, 5, 6 / 중 2, 3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4,730원	4~9월	특수 학교 무료

○ 건강검사의 기록

-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 건강검진, 별도검사)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관리 확인
- 건강검진관련 자료는 사본의 경우 1년 보관, 원본의 경우 5년 보관

○ 검사 결과의 조치

-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 대책 강구
- 결과 조치: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 강구

06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 학생 관리 체계 강화

기본 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예방교육 철저
-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2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심폐소생술실습 교육 포함)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 계획 수립
 -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 강화 방안」 마련('24.4월)
- 「학교 응급상황 가이드라인」 배포('25.4월)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25.7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요 업무

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2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포함)
 -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교육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3월 31일까지 수립

*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비교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 학교의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 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1) '학교 내 자체 연수대장' 기록

(가) 심폐소생술 담당자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 현황을 자세히 기록·보관
(이수 관련 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 관리)

(나) 관리대장 기록(예시)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연수시간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소방 안전본부	2000.0.0	2000.0.0	4

* 연수 기관명 : 교육을 실시(등록부 관리)한 기관명 작성

※ 참고로 제시된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학교 자체' 추진 연수

(가)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 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

(나) 등록부(예시)

2000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00. 0. 0. 14:00~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3) (외부기관 연수관리)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자체 보관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건강취약 학생(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 학기 초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건강취약 학생 명단 첨부하여 건강취약 학생 관리 계획 수립
 -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건강취약 학생의 건강 상태,

주의 사항, 교육활동 지도 시 유의사항 등을 연수하여 건강취약 학생 보호 철저

※ 주의: 건강취약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건강취약 학생 기준

- 계속적으로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된 난치병,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학생
- 현재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는 학생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신장 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肝)질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B형간염 보균자인 학생
- 만성 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뇌전증(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틱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를 요하는 학생

다.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 강화 방안」 이행 철저

〈주요 내용〉

1.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건교사 직접 주사지원
 2.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보건교사 등 대상 연수과정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3.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시험)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상황 대응요령 등은 「학교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25.4.25.) 및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25.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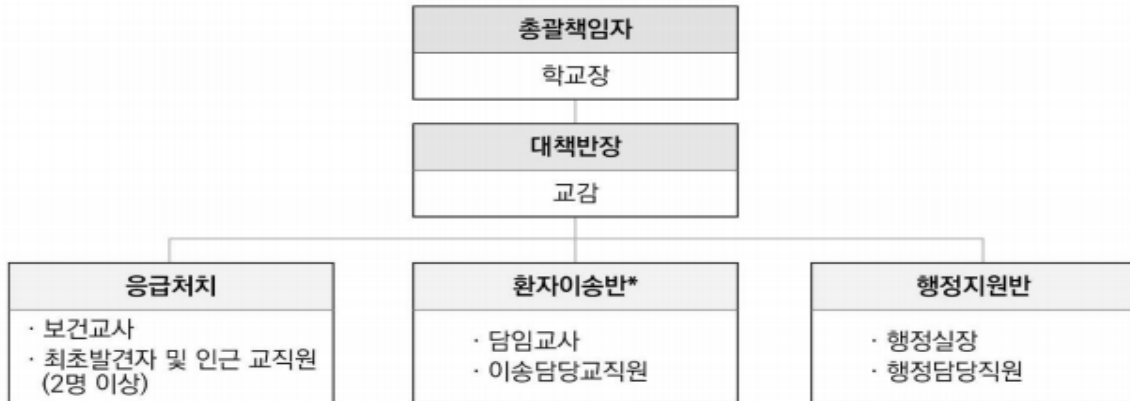
라. 희귀난치질환 학생 지원

- 희귀질환을 가진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협업 자료, ‘교직원을 위한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 등 활용
 - 희귀질환목록은 ‘희귀질환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 매년 11월 말 업데이트된 질환 목록 확인
 - 중증난치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확인
- *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16종)에 대하여 질환별 개요, 연령별 중점 관리사항, 교직원이 숙지해야 하는 관리사항 등으로 구성,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탑재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대상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지원 방법 및 규모 : 보호자 신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에서 선정

마.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이송, 행정 지원 등 필요 사항을 정하고 운영하는 체계 구축
- 학교 응급상황 대응 계획 수립(「학교 응급상황 가이드라인」제3장 부록 I. 참고)
 - 매 학년 초 학교 교직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계획에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계획 반영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인근 의료기관 정보 사전 파악
 - 학교장은 업무분장 시 보건교사 부재 시에 대비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응급상황 대응 조직 구성(예시,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관리 체계 구성에 따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적절한 역할 수행 필요

-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학교 자체 차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정보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함



* 환자 이송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는 이송 차량 운전에서 제외함

○ 응급상황 대응반의 주요 업무(예시)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교직원은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대응체계, 신고방법, 지역 내 소방서 및 의료기관 연락처 등 숙지 필요
- 보건교사 부재 시 대비하여 지명된 보건 업무 대행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사전 숙지
- 응급상황 대응반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학교의 인력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구분	담당자	업 무
총괄책임자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대책반장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 교장에게 응급상황 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보건실 업무 대체 교사 배치 • 담임교사의 의료기관 이송에 따른 학급·수업 관리 대체 교사 배치 • 이송 교직원의 출장 처리, 경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업무 지시
응급처치반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표준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등 상황별 응급처치 수행 • 담임교사에게 연락 • 119 도착 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 교감에게 응급환자 발생상황 및 처치 결과 보고 • 기록(응급환자 기록지/보건일지,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지 등)
	최초발견자 및 인근 교직원 (2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보건교사에게 연락 • 최초 발견자는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 심장정지 시 가슴 압박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원 요청 시 협조 • 현장의 안전성 확인 및 관리
환자이송반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 • 교감에게 학생 응급상황 보고 • 의료기관 이송 시 학생과 동행,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이송담당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송 동행, 직접 차량 운전(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 담임교사 부재 시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행정지원반	행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행정담당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 응급상황 발생 시 3C(Check-Call-Care) 응급처치 실시

담당자	구분	대 처 요 령	
최초 발견자	보건 교사 외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여부 판단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보건교사 연락
		Care	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보건교사의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 관리 보건교사에게 초기 응급상황 설명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보건 교사 (보건 업무 담당 교사)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등 환자의 상태 평가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측정 및 환자 상태 판단(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에 도움 요청)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담임교사 연락
		Care	심장정지 시 표준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현장 안전 관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필요한 상황에 맞는 초기 응급처치 수행 필요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위한 교직원 지원 요청 및 협력 119구급대원 도착 시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이송 중 응급처치 필요 시 보건교사 동행(학교 자체 차량일 경우) 보고 및 기록
담임교사	Call	교감 연락 및 보고 학부모(보호자) 연락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교감	Call	학교장 연락 및 보고	
	Care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행을 위해 응급처치반에 교직원 추가 배치 보건교사, 담임교사, 이송교직원 등 업무 공백 시 대체 교사의 배정 조치 행정지원반에 관련 행정업무 지원 요청	
학교장	Call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Care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교직원	Care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이송담당교직원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직접 차량 이송(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담임교사 부재 시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행정담당직원	Care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행정실장	Care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 상황별 응급처치 참고(「학교 응급상황 가이드라인」(교육부, '25.4월)) 제2장 참고

○ 응급사고 후 관리 체계

-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 『응급환자 기록지/보건일지, 이송 및 사고 기록지 등』 작성·보관

※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보관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처리,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 응급증상 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p>1. 응급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⑦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p>2. 응급에 준하는 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료비 지원)

-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8.1.)
-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 2. 24.>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89호, 2020. 12.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89호,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70호, 2020. 3.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5370호, 2020. 3.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V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3. 제1형 당뇨 등 건강취약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5. 보건교육 실시 현황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8.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026년 학교보건 보고 목록

순번	보고 사항	지정 서식	보고 기 한	제출 방법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서식1호	'26.3.13.	교육행정 데이터 포털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서식2호	'26.5.15.	
3	제1형 당뇨 등 건강취약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서식3호	'26.4.24.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4호	'26.12.18.	
5	표본학교 건강검사 결과(표본학교 52교)	NEIS	별도 계획에 따른 안내	NEIS
6	보건교육 추진 현황	서식5호	'26.12.18.	교육행정 데이터 포털
7	학생건강증진 교육 추진 현황	서식6호	'26.12.18.	
8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서식7호	'26.12.31.	
9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서식8호	사안 발생 시 유선통보 후 공문 보고	

[서식 1호]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승인완화요청사항 (해당란에 ○ ×)		초				중1		고1	
					1		4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개 기관선정	출장검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검진기관 승인 완화 요청 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												

- * 출장검진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서식 2호]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1. 일반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치과포함여부

2. '별도계약' 구강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비 고

- * 일반검진의료기관에 구강검진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강검진기관 별도계약

[서식 3호]

제1형 당뇨병 건강취약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6.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명)

학교급	제1형 당뇨병 학생 재학 학생 수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학생 수*
초/중/고/특수/각종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병 학생 현황

2. 건강관리 지원현황 (※ 중복표기)

(단위 : 명)

학교급	구분	지원 학생 수
초/중/고/특수/각종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6. 4. 1. 기준)

(단위 : 명)

학교급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재학 학생 수	지원 현황		
		석션(기도흡인)	인공도뇨	그 외
초/중/고/특수/각종				

※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학생 상세 현황('26. 4. 1. 기준)

(단위 : 명)

학년	성별	KCD코드	항목분류	질환명(한글)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1.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계	남	여	계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명, 천원)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계	남	여	계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보건교육 실시 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							
중						/	/	/	
고						/	/	/	
특수									
각종									

*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16차시 이상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1. 교육 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마약류										
흡연 예방										
음주 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 관리 (저체중, 비만 예방)										
구강 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 배포는 제외)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 주제별 건강증진교육 실시 학교 수와 일치	마약류 단독 주제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 수(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 수(교)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 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 건강증진교육,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 실적

○ (흡연예방 미실시교 조치)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음주예방 미실시교 조치)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교육 미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조치사항 반드시 이행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 교육청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 ¹⁾	교육이수 인원 ²⁾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된 교직원의 이수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6. 00. 00.(), 00학교〉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6.11.11.	백일해	1	학생	2-1(1)	'26.11.12.	'26.11.12.	'26.11.25.
'26.11.13	결핵	1	교원	2-1 담임(1)	해당없음	'26.11.15.	미정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 기재

**동일 감염병에 대해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6.11.14	최초	학생	6-5	23	백일해: 1명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교직원	6-5 담임	3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V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3. 2026년도 학생건강검진 비용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병리검사 판정 기준
5. 문진표(초등학생용)
6. 문진표(중·고등학생용)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9. 학생건강기록부
10.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11.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 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의 견수령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 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6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6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 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한다.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고1 여학생)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3]

2026년도 학생 건강검사 항목별 검진비용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형태(척추 측만증 검사)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9,820	
구강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병 리 검 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혈액(비만학생) - 혈당, AST, ALT -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	-	20,480	-	20,480	-	20,480	-	20,48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	1,270	1,270	
	결 핵 검 사* (촬 영)	14"×14"	-	-	-	9,720	9,720	9,720	9,720	9,720	9,720
		14"×17"	-	-	-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CR or DR	-	-	-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Full PACS	-	-	-	9,270	9,270	9,270	9,270	9,270	9,270
Full PACS 판독의뢰		-	-	-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계	14"×14"				28,780	49,260	28,780	49,260	30,050	50,530	
	14"×17"				29,100	49,580	29,100	49,580	30,370	50,850	
	CR or DR	19,060	19,060	39,540	27,360	47,840	27,360	47,840	28,630	49,110	
	Full PACS				28,330	48,810	28,330	48,810	29,600	50,080	
	Full PACS 판독의뢰				27,360	47,840	27,360	47,840	28,630	49,110	

* 결핵검사 : 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검진수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발령」(2026. 1. 1. 시행) 참고

[참고자료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12. 26.] [교육부고시 제2022-37호, 2022.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판정결과 기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진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

② 검진 항목별 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진결과 판정) ①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검진기관의 검진역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를 참조한다.

제4조(검진결과 기재) ① 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2.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22-37호, 2022. 1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p>〈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 시력측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나. 안질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td> </tr> </table>	가. 시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가. 시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3. 귀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냐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코 콧병	·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 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파 신장 질환 증상 동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정밀검사 요함
			10세 이상	정상 정밀검사 요함
		U/L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 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 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 · 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참고자료 5]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순환기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기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혈액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몸에 멍이 잘 든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6]

문진표(중학생 · 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순환기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몸에 멍이 잘 든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퍼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교 정		좌: 우:				
안 질 환				간 세 포			AST	U/L
귀	청 력	좌: 우:		효 소			ALT	U/L
	귓 병			혈 색 소		g/dL		
콧 병				결 핵				
목 병			혈 압	수 측 기	mmHg			
피 부 병				이 완 기	mmHg			
소 변	요 단 백		허리둘레			cm		
	요 잠 혈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 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그 밖의 증상()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①	없음	②	있음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 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게(kg)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오 래 달리기-걸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빈 칸			빈 칸					
	1,600m(중·고 / 남)	분 : 초	빈 칸								
	1,200m(중·고 / 여)	분 : 초	빈 칸								
스 텝 검 사	PEI	빈 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종 합 유 연 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회	빈 칸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룰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진일		빈 칸				빈 칸		
	검진기관		빈 칸				빈 칸		
구강 검진	검진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 사 명								
검사기관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1. 취학 전에 받은 아래의 예방접종 여부(O, X)를 써 주십시오.(1학년만 해당)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결핵 ()	수두 ()	B형간염 : 1차() 2차() 3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1-2. 최근 1년간 받은 예방접종 내용을 써 주십시오. (1학년 제외)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접종명	접종일자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장염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그 밖의 질환 등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식품 알레르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약물 알레르기				
눈·귀	눈병, 사시 등 안과질환				당뇨병				
	중이염 등 귀질환, 청력장애				결핵				
피부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탄산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잔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피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약물의 본래 목적과 달리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TV·인터넷	가정 및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기를 원하니까?				성 의 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참고자료 11]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 최근 1년간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접종명	접종일자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눈·귀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그 밖의 질환 등	식품 알레르기				
		시력장애			약물 알레르기				
	귀	청력장애			당뇨병				
		그 밖의 귀 질환			결핵				
	피부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고혈압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청량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하루일과를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성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중·고등학교용 표본학교 건강조사표(B4용지)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행태 및 상태를 알아보고 보건교육에 활용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신장성 심장질환			
간질			
당뇨병			
천식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업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개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응급으로 비치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 종류	①	②	③	④
라면	먹지않음	1-2번	3-5번	매일먹음
음료수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유류 (소, 돼지,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감자 제외)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다?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안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실을 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표본학교 건강조사표 (중·고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쉬기 힘들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찌꺼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더운 사발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헬스안 좋은 고지방이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슴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정신 건강	실사나 꾸토를 자주 한다. 기분이 처하거나 우울해서 화음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귀에서 맴어나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귀에서 맴어나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지금까지 결핵성 질병 (예: 폐결핵, 녹막염, 경부림프절 결핵 등)에 걸린 적이 있다.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이 있다.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 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위의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TID(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DTP가 아님)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반	학교 번
	학년 / 반 / 번호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건강 생활 행동					
수면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5일 이상				
및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잠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신체 활동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쪼뻏다 ⑤ 매우 살이 쪼뻏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자용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다. 인라인스케이팅,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안전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과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및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족에서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생활	학교 생활 문제로 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술이나 담배 문제로 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성 문제로 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진로 진도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학교 재량단)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364mm x 257mm (배상지 80g/m²)

[참고자료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예시안)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교육	<p>보건교육 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교육과정 (성·약물오·남용 예방·응급처치)교육 시수 반영 확인 • 보건교육 실시(1개 학년 이상 17차시) • 기타 학년의 비정규교육(필요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보건교육 • 보건교육관련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등 • 보건게시판 관리(온오프라인) <p>교과서 선정 업무 협조</p> <p>보건교육 자료의 확보 및 제작,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선택교과 (중학교 선택교과 및 고교학점제 운영 시) • 교과서 선정 • 교육계획, 평가계획 수립 후 연구부 자료 제출 • 필요시 학부모 공개수업 준비 • 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개발 • 선택교과 시 모든 학생 대상 생활기록부 작성(1500byte) • 창체(자율) 시 활동 주제, 특기사항 입력 <p>학생 보건 동아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 매주 동아리 활동 구상 및 운영 후 평가 • 축제 부스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 생활기록부 동아리 특기사항 입력(1500byte)
공통	보건실 관리	<p>보건실 방문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학생 문진 및 건강사정 • 건강문제에 따른 의약품 투약 및 부작용 모니터링 • 보건실 내 안정실 이용 학생 증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활력징후 모니터링 • 병원 의뢰 여부 판단 • 병원 의뢰 시 담임교사 연락 • 보건일지 작성 및 관리 • 입실확인증 등 관리 • 입실 규정 및 출결 처리 연계 협조 <p>응급환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및 시행 • 응급환자 건강사정 • 응급처치 및 필요시 119신고 •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 • 기타 응급환자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 • 응급환자이송 기록지 작성 및 관리 <p>의약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따른 필요 약품 파악 • 필요의약품 품의 및 신청 • 구비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관리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 약품사용 기록 <p>의료기기 비품 관리 및 소독</p>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공통	건강취약 학생 관리	<p>전교생 건강상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초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 실시 •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면담 <p>건강취약 학생 선정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조사서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 건강상태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반영하여 건강취약 학생 선정 • 학교생활 시 주의사항 및 의료서비스 관련 학부모 상담 • 건강취약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 건강취약 학생 정기 건강상담 및 기록 • 건강취약 학생 학생 관리대장 작성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연간 계획 수립	<p>학교보건 연간계획 수립 [보건(2)의 협조를 받아 보건(1)이 최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운영 계획 • 학생 건강검사 계획 • 건강취약 학생 관리 계획 • 응급상황관리 계획(응급처치·이송관리·심폐소생술포함) •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 감염병 예방 계획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계획 • 체형 불균형 관리 계획 • 당뇨학생 관리 계획(해당 학생 재학 시) • 보건교육 계획 <p>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보건 부분 (연구부 협조)</p> <p>학교정보공시(보건 부분) 입력</p> <p>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조정</p>	보건 (2)	감염병 관리	<p>감염병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예방접종 관련 업무 (신입생 예방접종내역 확인 포함) <p>감염병 발생 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현황 모니터링 • 매뉴얼에 의거 유행여부 판단 •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나이스 보고 • 교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활성화 • 보건소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 역학 조사 시 협조 <p>감염병 보조 인력 관리</p> <p>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관리</p> <p>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일정 조정 • 검진 실시 및 결과 안내 • 미검자 추후 검진방법 안내 <p>기타 감염병 관련 업무</p>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성 (교육) 관련 업무	학생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성교육 시수 반영 확인 •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시수 반영 확인 • 필요 시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 성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계획 및 지침 수립 • 성 고충 상담원 구성 및 성 고충 상담창구 운영 • 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협조 (교육, 회의 참석) • 성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보고(성 관련 부분) • 교직원 성 관련 의무연수 추진(3시간) • 학부모 연수 및 가정통신문 	보건 (2)	건강 증진 관련 사업	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예산 관련 목적사업비 운영 • 관련 연수 참석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사업 체형 불균형 관리 사업 당뇨학생관리(해당 학생 재학 시) 선정시 아래의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사 표본학교 • 건강증진학교 운영 • 아동 구강 실태조사 •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기타 건강증진 관련 사업
	흡연 예방 사업	학교흡연예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 • 실태조사(3월 건강조사 포함 가능) •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 외부교육 인력 관리(강사초빙) - 체험부스 운영 제반사항 • 학교흡연예방사업 실적입력 		건강 검사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선정 및 안내 • 기관선정 업무 (필요 시 완회승인 요청, 학운위 상정 등) •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별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검사(초2,3,5,6/ 중2,3) • 소변검사(초2,3,5,6/ 중2,3 /고2,3) • 결핵검사(고2,3학년) • 일정 조정 및 실시/미검진학생 관리 건강검사 결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 별도검사 유소견자 추후관리 • 건강검사 관련 결과 보고
보건 (1)	기타 명시되지 않는 보건업무	교육청 긴급 편성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 관련 서류 제출 및 • 예산 조정 업무 각종 위원회 참석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심의위원회 등) 보건관련 현안 조사 등 부담임 업무 (해당학교) 생리대 사업(현재 고교 여학생만 해당) 현혈 사업(현재 고교만 해당) 보건 교생실습(성교육실시)	보건 (2)	건강 기록부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인적사항 생성 • 건강기록부 수시 점검 • 학년 말 건강기록부 마감 및 상신
	교직원 심폐 소생술	교직원 심폐소생술 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및 기관선정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및 결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명단 관리 • 미이수자 추후 이수 방법 안내 • 교육 실적 관리 및 보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매월)			

총괄	백 기 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감수	김 필 모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지도	안 지 현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장학관
기획 및 집필	임 이 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장학사
집필	김 동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주무관 최 민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주무관

본 자료의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 자료마당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에 수록하지 않은
‘2026학년도 학교보건 운영 관련 각종 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